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례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 원(입회 시 1회) · 월정회비 : 3만 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 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 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분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 무엇보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Compulsory membership’,
above all, present a vision!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현행 건축사협회 임의가입제가 22년 만에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제로 전환된다. 대한민국 내 여러 직능단체들이 잠시 임의가입을 유지하다 오래전에 의무가입으로 복원이 진행되었음에도 건축사의 의무가입은 이제야 비로소 마무리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반대 입장이 존재하고, 향후 제도 안착 과정이 창창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어려움과 내부의 갈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건축사 역시 법률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 역할과 동시에 국가 공인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소명이 있다.

의무가입 시행 이후를 대비해 준비하고 개선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무엇보다 건축사의 윤리적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수많은 건설 현장의 사건과 사고 이면에는 불법과 탈법, 그리고 무사안일과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건축은 문화 예술적인 성과물인 동시에 기술과 공학의 집

합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축사의 비도덕적 부

패와 무능은 곧바로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

는 문제다. 지엽적이고 작은 이익에 골몰해서

는 안 된다. 작은 세계에서 생존해야 하는 특

성상 카르텔의 필요와 존재에 대한 이해

는 되지만, 이것이 무능이나 부패를

합리화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아닌 말로, 누군가의 담당 구역에 다른 지역의 건축사가 들어갈 때 맹목적으로 배척하고 방해해서는 모두가 공멸하는 시간을 앞당길 뿐이다.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장과 모드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사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다 큰 비전을 제시하고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건축사들이 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요구해야 한다.

2022년, 대한건축사협회는 우리 사회에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면한 대한민국의 과제에 건축사들의 해법과 대안이 등장해야 한다. 당장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격안

정이라는 숫자에 집중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이로써 도시 공동체, 사회 공동체는 무시되고 의사결정의 뒷안길에 몰려서 있다. 건축사들은 부동산을 구체적 결과물로 만드는 전문가다. 가격 중심의 부동산을 뛰어넘어, 건축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동시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질서를 선도하는 첨단 지식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 문화 예술적 성과가 그 어느 시대보다 크게 효과를 발휘하는 현재, 건축의 가치와 본질을 선도하는 개방적이고 수준 높은 환경을 이끌어야 한다.

향후 몇 년간 이런 미래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건축사들의 설자리가 결정된다.

2022년! 비전을 제시하라!